

# 예 산 총 칙

2008년도 [제1회 추경예산]

\* 제1조 : 2008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 산 총 액	일시 차입 한도액
<b>총</b>	<b>계</b>	<b>441,502,461</b>	<b>13,245,074</b>
<b>일</b>	<b>반 회 계</b>	<b>352,460,032</b>	<b>10,573,801</b>
<b>특</b>	<b>별 회 계</b>	<b>89,042,429</b>	<b>2,671,273</b>
	의 료 급 여 기 금	1,503,450	45,104
	주 민 소 득 지 원 자 금 운 영 관 리	646,179	19,385
	저 소 득 주 민 생 활 안 정 자 금	594,271	17,828
	농 공 지 구 조 성	12,410,000	372,300
	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5,150,000	154,500
	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	1,408,327	42,250
	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	2,114,335	63,430
	주 택 사 업	746,275	22,388
	기 반 시 설	1,025,535	30,766
	수 질 개 선 관 리	2,794,143	83,824
	사 포 지 방 산 업 단 지	32,761,649	982,849
	상 수 도 사 업	10,614,042	318,422
	하 수 도 사 업	17,274,223	518,227

\*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‘세입·세출예산’ 과 같다.

\* 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‘채무부담행위조서’ 와 같다.

\* 제4조 : 계속비사업은 별첨 ‘계속비사업조서’ 와 같다.

\* 제5조 :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‘명시이월사업조서’ 와 같다.

\* 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5,661,095천원 으로 한다.

\* 제7조 :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.

\* 제8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